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1. 4. 10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1. 4. 1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6회 부천시의회(임사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4.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여성복지과장 김창남)

제안이유

- 보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천시보육위원회 임기는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임기를 규정하고,
-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추천 권한은 의회의 추천보다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이 합당하며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보호자 대표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여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

- 보호자 대표는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규정함(안 제4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대표는 몇 명인가? ○ 임기규정은 신설하는 것인지? ○ 보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으로 의회 추천임 ○ 상위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규칙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규칙을 삭제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이해 당사자들의 대립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에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함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요지

○ 별 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462호
의결년월일	2001. 4. 24 (제86회)

제출년월일 : 2001. 4. 10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보육위원회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이므로,
- 직능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할 경우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을 20인 이내로 하는 것을 15인 이내로 하고 그 구성을 유아교육전문가 3인, 보육시설장대표 2인, 보육교사 2인, 해당상임위원회 시의원 3인, 시민단체 3인, 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조정(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유아교육

전문가 3인, 보육시설장대표 2인, 보육시설교사 2인, 부천시의회 해당상임위원회 위원 3인, 시민단체 3인,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안 제4조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20인 이내로 하</u> <u>되,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u> <u>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u> <u>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u> <u>구성한다. 다만, 복지 및 유아</u> <u>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u> <u>대표, 보호자 대표 중 3인은</u> <u>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u> <u>로 구성한다.</u>	제3조(위원회의 구성) …… …………… …………… …………… …………… …………… …………… …………… ……………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 …………… …………… …………… …………… …………… …………… ……………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 …………… …………… …………… …………… …………… …………… ……………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 …………… …………… …………… …………… …………… …………… ……………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 …………… …………… …………… …………… …………… …………… ……………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 …………… …………… …………… …………… …………… …………… ……………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 …………… …………… …………… …………… …………… …………… …………… …………… …………… ……………
<신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 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 <u>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u> <u>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u> <u>으로 한다.</u>		제4조(위원의 임기) …… …………… …………… …………… …………… …………… …………… …………… …………… …………… …………… ……………	제4조(위원의 임기) …… …………… …………… …………… …………… …………… …………… …………… …………… …………… …………… ……………	제4조(위원의 임기) …… …………… …………… …………… …………… …………… …………… …………… …………… …………… …………… ……………	제4조(위원의 임기) …… …………… …………… …………… …………… …………… …………… …………… …………… …………… …………… ……………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4호
의결년월일	2001. 4. 24 (제86회)

제출년월일 : 2001. 4. 1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보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천시보육위원회 임기는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

칙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임기를 규정하고,

-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추천 권한은 의회의 추천보다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이 합당하며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보호자 대표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여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보호자 대표는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규정함(안 제4조)

【수정안 포함】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유아교육전문가 3인, 보육시설장대표 2인, 보육시설교사 2인, 부천시의회 해당상임위원회 위원 3인, 시민단체 3인,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 내지 제7조를 제5조 내지 제8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육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20인 이내로 하되,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u> <u>다만,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 대표 중 3인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u></p> <p><신설></p>	<p>제3조(위원회의 구성)<u>15인 이내로 하되, 유아교육전문가 3인, 보육시설장 대표 2인, 보육시설교사 2인, 부천시의회 해당상임위원회 위원 3인, 시민단체 3인,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보호자 대표는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u></p> <p>제4조(위원의 임기)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u></p>

제4조(회의의 역할 등) (생략)

제5조(위원회 수당) (생략)

제6조(위탁운영) (생략)

제7조(규칙) (생략)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의 역할 등)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수당)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운영) (현행과 같음)

제8조(규칙) (현행과 같음)